

위성항법시설(SBAS) 관리·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

일부개정고시

1. 개정이유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, 2021.2.5.)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, 2021.2.5.) 제7조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된 행정규칙(고시)의 재검토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설정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일부개정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위성항법시설(SBAS) 관리·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

위성항법시설(SBAS) 관리·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검토 기한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6. 재검토 기한</u> <u>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</u> <u>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</u> <u>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</u> <u>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</u> <u>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</u> <u>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</u> <u>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</u> <u>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</u> <u>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